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이지연, 김낙관, 김영길, 김재우, 신문식, 윤종호,
장미경, 장세구 의원(8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10일

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지 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,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(안 제2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8. 27. ~ 9. 3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
-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상하수도 관련 시설, 가스공급 시설 분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